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27
----------	------

2025년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8.29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8.29

4.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1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312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 중 수입계획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수금 3,524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하려는 것임
- 지출계획은 타 기금의 수입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을 감액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탁금' 3,524억원과 '예치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예탁금 변경 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

나. 운용규모 : 1,949,596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352,400백만원 증가)

〈표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감 (B-A)	구분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감 (D-C)
합 계		1,597,196	1,949,596	352,400	합 계		1,597,196	1,949,596	352,400
용 자 금 원리금회수		15,250	15,250	-	재무활동	소 계		1,597,189	1,949,589 (22.1%)
예 수 금		1,350,414	1,702,814	352,400		예 수 금 원금상환		160,473	158,473 △2,000
						예 수 금 이자상환		71,282	71,282 -
						예 탁 금		1,261,800	1,614,200 352,400
						예 치 금		103,635	105,635 2,00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23,970	23,970	-	행정운영경비	소 계		7	7 -
예 치 금 회 수		144,741	144,741	-		기본 경비		7	7 -
이 자 수 입		62,822	62,822	-					

○ 수입계획 변경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 변경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등으로 **예수금 352,400백만원 증가**

▶ 예수금 : (당초) 1,350,414백만원 → (변경) 1,702,814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432,528 → 434,928백만원(2,400 증액)
- 재난관리기금 0 → 350,000백만원(350,000 증액)

○ 지출계획 변경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융자해준 20억원의 회수가 필요하여 **예수금 원금상환 △2,000백만원 감액**

▶ 예수금 원리금상환 : (당초) 231,754백만원 → (변경) 229,754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00백만원 → 0(△2,000 감액)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탁금 352,400백만원 증가**

▶ 예탁금 : (당초) 1,261,800백만원 → (변경) 1,614,200백만원

- 일반회계 0 → 350,000백만원(350,000 증액)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606,000 → 613,900백만원(7,900 증액)
- 도시철도건설(특) 398,900 → 393,400백만원(△5,500 감액)

- 수입·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2,000백만원 증가**

▶ 예치금 : (당초) 103,635백만원 → (변경) 105,635백만원

3. 검토의견¹⁾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요되어야 할 재원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동 기금으로 예수 받아 이를 지출계획에도 연동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3,500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24억원²⁾을 예수(용자) 받아, 당초보다 3,524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하려는 것임

〈표 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 · 감 (C=B-A)	증 · 감 사유
수 입 합 계		1,597,196	1,949,596	352,400	
용 원 리 자 금 회 금 수		15,250	15,250	-	○변동없음
예 수 금		1,350,414	1,702,814	352,400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24억) ○재난관리기금 예탁(3,500억)
예 원 금 탁 회 금 수		23,970	23,970	-	○변동없음
예 치 금 회 수		144,741	144,741	-	○변동없음
이 자 수 입		62,822	62,822	-	○변동없음

-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출계획 변동 사항으로, 3건의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24억원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려는 것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 계획 (A)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B)	증감 (C=B-A)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시개발)	432,527백만원	434,927백만원	2,400백만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도시개발)	예비비 (도시개발)	4,076백만원	4,127백만원	51백만원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	2,900백만원	2,756백만원	△143백만원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2,200백만원	600백만원	△1,600백만원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환경개선 및 도시 개발 관련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2,707백만원	1,999백만원	△708백만원

- 수입계획과 연동되는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3,524억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①예수금 원금상환은 당초계획보다 △20억원을 감액하고,³⁾ ②예탁금은 3,524억원을 증액하며⁴⁾ ③예치금은 2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써⁵⁾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1조 5,971억 8,900만원)보다 22.1%, 3,524억원 증액된 1조 9,495억 8,9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⁶⁾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아울러 동 지출계획의 경우,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⁷⁾에 따른 통합계정의 운용 용도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용자해준 20억원을 현재로서는 회수할 필요가 없어 당초계획 한 예수금 원금상환은 △20억원을 감액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3,500억원 증액(일반회계),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의 재정 보전을 위한 지출 79억원 증액(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완료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47억원 감액(도시철도건설(특)),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계약단가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8억원 감액(도시철도건설(특))

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이 감액되어, 예치금 20억원을 증액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7)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략)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공기업으로의 용자
3.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표 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 책 사 업 / 단 위 사 업 / 세 부 사 업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 · 감 (C=B-A)	증감률 (D=C/A)
지 출 합 계	1,597,196	1,949,596	352,400	
재 무 활 동	1,597,189	1,949,589	352,400	22.1%
내 부 거 래 지 출	1,493,555	1,843,955	350,400	23.5%
예 수 금 원 금 상 환	160,473	158,473	△2,000	△1.2%
예 수 금 이 자 상 환	71,282	71,282	-	-
예 탁 금	1,261,800	1,614,200	352,400	27.9%
보 전 지 출	103,635	105,635	2,000	1.9%
예 치 금	103,635	105,635	2,000	1.9%
행 정 운 영 경 비	7	7	-	-
기 본 경 비	7	7	-	-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안 제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 심의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9)

8)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9793 ('25. 8.29), “2025년 제5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3,500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4억원을 예수하고, 지출계획에도 이를 연동시키는 것으로써, 동 기금의 지출계획에는 예수금 이자상환 항목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¹⁰⁾는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분기별 특정일까지 납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수입계획에 3,524억원의 예수금 수입을 신규로 계획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 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지출계획이 실행되어 이자 부담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는 지출계획 중 이자상환에 대한 과목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미구성」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9.11)

10)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원리금 상환)

-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 ④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이하 생략)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12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수금·예탁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원 예탁금 반영

나. 운용규모 : 1,949,596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352,400백만원 증가)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구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감 (B-A)
계	1,597,196	1,949,596	352,400
융자금 원리금회수	15,250	15,250	-
예수금	1,350,414	1,702,814	352,400
예탁금 원금회수	23,970	23,970	-
예치금회수	144,741	144,741	-
이자수입	62,822	62,822	-

< 지출계획 >				
구분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감 (B-A)
계		1,597,196	1,949,596	352,400
재무 활동	소계	1,597,189	1,949,589	352,400 (22.1%)
	예수금 원금상환	160,473	158,473	△2,000
	예수금 이자상환	71,282	71,282	-
	예탁금	1,261,800	1,614,200	352,400
	예치금	103,635	105,635	2,000
행정 운영 경비	소계	7	7	-
	기본경비	7	7	-

○ 수입계획 변경

- 예수금 : 1,350,414백만원 → 1,702,814백만원 (증 352,400백만원)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사항 반영

• 도시개발특별회계	432,528 → 434,928백만원(증 2,400)
• 재난관리기금	0 → 350,000백만원(증 350,000)

○ 지출계획 변경

- 예수금 원리금상환 : 231,754백만원 → 229,754백만원 (△2,000백만원)
 -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불요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00백만원 → 0(△2,000)
------------------	----------------------

- 예탁금 : 1,261,800백만원 → 1,614,200백만원 (증 352,400백만원)
 -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일반회계	0 → 350,000백만원(증 350,000)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606,000 → 613,900백만원(증 7,900)
• 도시철도건설(특)	398,900 → 393,400백만원(△5,500)

- 예치금 : 103,635백만원 → 105,635백만원 (증 2,000백만원)
 -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민영(☎ 2133-6813)